

2023년 개정세법 주요 해설 특강

01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



국세기본법 제5조

가. 개정취지

- 관계 법령 개정(2021.8월)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이 구분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에도 이를 반영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신고, 신청 등의 기한이 아래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규정 ○ 공휴일 ○ 토요일 ○ 근로자의 날	☐ 대체공휴일 포함 명확화 ○ (추가) 대체공휴일 ○ (좌 동)

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·증여세 탈세 방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상속·증여세 부과제척기간 ○ (원칙) 10년* * 단,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 ○ (원칙) 다음의 경우는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(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) - 국외재산, 동기·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·서화·골동품 등을 상속·증여받은 경우 -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〈추 가〉	□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추가 ○ (좌 동) -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, 가상자산을 상속·증여받은 경우 * (예)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(P2P) 등의 방법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·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납세자 권익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☐ (신고기한)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☐ (신고대상) -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<추 가> ※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·납부한 경우에만 경정 청구 가능	☐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} ☐ (좌 동) - 종합부동산세를 부과·고지받은 납세자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○ 6촌 이내의 혈족 ○ 4촌 이내의 인척 ○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 ○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 〈추 가〉	☐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○ 4촌 이내의 혈족 ○ 3촌 이내의 인척 } ○ (좌 등) ○ 혼외 출생자의 생부·생모(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3.1.부터 시행

18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


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

가. 개정취지

-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조세불복을 청구한 자로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 ☐ (소득·재산 기준) -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- 재산가액 5억원 이하 ☐ (제외 기준) -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 -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 ☐ (청구세액 기준) -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	☐ 청구세액 기준 완화 } ☐ (좌 동) -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2.28.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
01

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



소득세법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

가. 개정취지

-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주택임대소득 과세* 고가주택 기준 *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☐ 기준시가 9억원 초과	☐ 고가기준 합리화 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2.28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02

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



소득세법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, 제19조

가. 개정취지

-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○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○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○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○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	☐ 비과세 한도 확대 ○ (좌 동) ○ 월 10만원 이하 → 월 20만원 이하 ○ (좌 동) ○ 월 10만원 이하 → 월 20만원 이하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04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



소득세법 제48조 제1항

가. 개정취지

- 퇴직자 세부담 경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	개 정	
□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		□ 근속연수공제액 확대	
근속연수	공제액	근속연수	공제액
5년 이하	30만원 × 근속연수	5년 이하	100만원 × 근속연수
6~10년	150만원 + 50만원 × (근속연수 - 5년)	6~10년	500만원 + 200만원 × (근속연수 - 5년)
11~20년	400만원 + 80만원 × (근속연수 - 10년)	11~20년	1,500만원 + 250만원 × (근속연수 - 10년)
20년 초과	1,200만원 + 120만원 × (근속연수 - 20년)	20년 초과	4,000만원 + 300만원 × (근속연수 - 20년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

05
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



소득세법 제52조 제4항

가. 개정취지

-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☐ (대상)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☐ (소득공제율) 40% ☐ (공제한도) 300만원	☐ 공제한도 확대 ☐ (좌 동) ☐ (좌 동) ☐ 400만원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서민·중산층 세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	개 정	
□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		□ 과세표준 조정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1,200만원 이하	6%	1,400만원 이하	6%
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	15%	1,400만원 ~ 5,000만원 이하	15%
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	24%	5,000만원 ~ 8,800만원 이하	24%
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	35%	8,800만원 ~ 1.5억원 이하	35%
1.5억원 ~ 3억원 이하	38%	1.5억원 ~ 3억원 이하	38%
3억원 ~ 5억원 이하	40%	3억원 ~ 5억원 이하	40%
5억원 ~ 10억원 이하	42%	5억원 ~ 10억원 이하	42%
10억원 초과	45%	10억원 초과	45%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근로소득세액공제 ○ 공제율 -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: 55% -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: 30% ○ 공제한도 - 총급여 3,300만원 이하 : 74만원 - 총급여 3,300만원 ~ 7,000만원 이하 : 74만원~66만원* * $\text{Max}\{74\text{만원} - (3,300\text{만원 초과 급여액} \times 0.8\%), 66\text{만원}\}$ - 총급여 7,000만원 초과 : 66~50만원* * $\text{Max}\{66\text{만원} - (7,000\text{만원 초과 급여액} \times 1/2), 50\text{만원}\}$ 〈신 설〉	☐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○ (좌 등) - 총급여 7,000만원 ~ 1.2억원 이하 : 66~50만원* * (좌 등) - 총급여 1.2억원 초과 : 50~20만원* * $\text{Max}\{50\text{만원} - (1.2\text{억원 초과 급여액} \times 1/2), 20\text{만원}\}$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

소득세법 제59조의3, 제64조의4 신설,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

가. 개정취지

- 개인·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			개 정			
□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				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 소득금액 기준 합리화			
○ 연금저축 + 퇴직연금				○ 연금저축 + 퇴직연금			
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연금저축 납입한도)		세액 공제율	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연금저축 납입한도)		세액 공제율
	50세미만	50세이상					
5,500만원 이하 (4,000만원)	700만원 (400만원)	900만원* (600만원*)	15%	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	900만원 (600만원)	15%	
1.2억원 이하 (1억원)							
1.2억원 초과 (1억원)	700만원 (300만원)		12%	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		12%	
* 2022.12.31.까지 적용							
□ 연금계좌 납입한도				□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			
○ 연금저축 + 퇴직연금 : 연간 1,800만원				○ (좌 동)			
○ 추가납입 가능				○ 추가납입 항목 신설			
- ISA계좌* 만기 시 전환금액				- (좌 동)			
*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							

종 전	개 정
〈추 가〉 □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○ 1,200만원 이하 : 저율·분리과세* 또는 종합과세 * (55세~69세) 5%, (70~79세) 4%, (80세~) 3%, (종신수령) 4% ○ 1,200만원 초과 : 종합과세	- 1주택 고령가구*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(1억원 한도) *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□ 연금소득 1,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○ (좌 동) ○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(공제 대상 납입한도) 2023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(추가납입) 2023.7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(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) 2023.1.1.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자녀세액공제 ○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(셋째부터 30만원) 공제	☐ 공제대상 연령 조정 ○ 만 7세 이상 → 만 8세 이상 ※ 2022.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→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가. 개정취지

- 교육비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☐ (공제율)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 세액공제 ☐ (공제대상) - (본인) 대학(원) 학비,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- (취학전 아동) 유치원·어린이집 수업료, 학원비 등 - (초·중고·대학생) 수업료, 교재비, 입학금 등 〈추 가〉	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☐ (좌 동) - 대학입학전형료, 수능응시료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2.28.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12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



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, 제16조의3

가. 개정취지

-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벤처기업 스톡옵션¹ 행사이익²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*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**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○ (비과세)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〈신 설〉 ○ (분할납부)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〈추 가〉	□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○ 비과세 한도 상향: 연간 5천만원 → 2억원 - 누적한도³: 5억원 *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 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○ (좌 동) -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·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☐ (개념)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* 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*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☐ (요건) ❶ & ❷ & ❸ & ❹ ❶ (양도대상)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*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* §97의2① 적용받은 경우 ❷ (적용기간)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❸ (부당감소) ㉠ < ㉡ ㉠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+ 증여세액 ㉡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❹ (적용제외)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	☐ 적용기간 확대 } ☐ (좌 동) ❷ 5년 → 10년 } ☐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* 요건 : ❶+❷ *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❶ (신규주택 취득기간)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❷ (종전주택 양도기한) - (조정 → 조정)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- (그 외)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	□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3년으로 완화 ○ (좌 동) ○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
□ 일시적 1세대 1주택 + 1임주권·분양권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○ (원칙) 임주권·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○ (특례) 임주권·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초과 시 : ❶ 또는 ❷	□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 기한 연장 ○ (좌 동)

종 전	개 정
❶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+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❷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+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□ 대체주택* 처분기한 : ❶ 또는 ❷ * 재건축·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❶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+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❷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양도 +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	❶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+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❷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+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□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 연장 ❶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+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 ❷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+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2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호, 제167조의4 제3항 제6의2호, 제167조의10 제1항 제12의2호,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

가. 개정취지

-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	☐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
☐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☐ 장기임대주택, 장기어린이집 ☐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☐ 장기사원용 주택 ☐ 상속주택, 문화재주택 ☐ 동거분양, 혼인, 취학, 근무,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	☐ (좌 동)
☐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.5.10.부터 2023.5.9.까지 양도하는 주택	☐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022.5.10.부터 2024.5.9.까지 양도하는 주택



가. 개정취지

-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☐ 일반법인, 연결법인, 합병·분할법인, 외국법인 :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% ☐ 중소기업 : 소득의 100%	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☐ 60% → 80% ☐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가. 개정취지

-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손금(필요경비) 대상 기부금 종류 ❶ 소득의 50% 한도 손금(필요경비) 산입 기부금 ☐ 국가, 지자체, 국방헌금, 이재민 구호 금품 등 ❷ 소득의 10%(20%) 한도 손금(필요경비) 산입 기부금 ☐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	☐ 손금(필요경비)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❶ 명칭 : “특례기부금” ☐ (좌 동) ❷ 명칭 : “일반기부금” ☐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가. 개정취지

-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								
☐ 접대비의 손금(필요경비) 불산입 ☐ (정의) 접대, 교제,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(사업자)이 직·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☐ (손금한도) 기본한도 + 추가한도 - 기본한도 : 1,200만원 (중소 3,600만원) - 추가한도	☐ 명칭 변경 접대비 → 기업업무추진비 ☐ (좌 동)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수입금액 구간</th><th>한 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억원 이하</td><td>수입금액 × 0.3%</td></tr> <tr> <td>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</td><td>3천만원 + (수입금액 - 100억원) × 0.2%</td></tr> <tr> <td>500억원 초과</td><td>1.1억원 + (수입금액 - 500억원) × 0.03%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수입금액 구간	한 도	100억원 이하	수입금액 × 0.3%	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3천만원 + (수입금액 - 100억원) × 0.2%	500억원 초과	1.1억원 + (수입금액 - 500억원) × 0.03%	
수입금액 구간	한 도								
100억원 이하	수입금액 × 0.3%								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3천만원 + (수입금액 - 100억원) × 0.2%								
500억원 초과	1.1억원 + (수입금액 - 500억원) × 0.03%							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 - 2024.1.1.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「법인세법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봄



가. 개정취지

- 기부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50% 한도 기부금의 대상 ☐ 국가, 지자체 등 ☐ 국방현금, 국군장병 위문금품 ☐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☐ 학교 등(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·연구비 목적 한정) 〈추 가〉	☐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☐ (좌 동) ☐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11 법인세 세율 인하



법인세법 제55조

가. 개정취지

-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·일자리 창출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	개 정	
□ 법인세 세율		□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%p씩 인하	
과세표준	세 율	과세표준	세 율
2억원 이하	10%	2억원 이하	9%
2~200억원	20%	2~200억원	19%
200~3,000억원	22%	200~3,000억원	21%
3,000억원 초과	25%	3,000억원 초과	24%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 - * 2023.1.1.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「법인세법」 제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



가. 개정취지

-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☐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☐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☐ 국립대학법인, 산학협력단	☐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☐ 30만원 미만 → 50만원 미만 } ☐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<추 가>	☐ 세액공제 항목 추가] ○ (좌 동) 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소득과익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☐ (대상)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(수입 금액)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* 2023.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※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(총수입금액)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☐ (기간) 당해연도 7.1.부터 다음연도 6.30.까지	☐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☐ (대상)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(수입 금액)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☐ (기간) 당해연도 7.1.부터 계속하여 발급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❶ (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) 2024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- ❷ (의무발급 기간 연장) 2023.7.1.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(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)부터 적용



가. 개정취지

- 납세자 권익 보호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* * 공급자가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☐ (신청기한) 해당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☐ (대상) 거래 건당 10만원	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 신청 대상 거래 확대 ☐ (좌 동) ☐ (대상) 거래 건당 5만원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2.28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